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국문번역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2008년 6월 16~19일 프랑스 파리 협약 당사국 총회 2차 본회의 채택

2010년 6월 22~24일 프랑스 파리 3차 본회의 개정

2012년 6월 4~8일 프랑스 파리 4차 본회의 개정

2014년 6월 2~4일 프랑스 파리 5차 본회의 개정

목차

제1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협력 및 국제원조

I.1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I.2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I.3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선정 기준

I.4 국제원조 요청 자격 및 선정 기준

I.5 복수국가 신청

I.6 신청서의 제출

I.7 신청서의 평가

I.8 가장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I.9 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I.10 등재 유산 목록 변경

I.11 목록에서의 유산 삭제

I.12 등재 유산 명칭 변경

I.13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I.14 국제원조

I.15 일정 - 절차 개요

I.16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 유산의 대표목록 통합

제2장 무형문화유산 기금

II.1 기금 자원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II.2 무형문화유산 기금 자원 증대 수단

II.2.1 기부자

II.2.2 조건

II.2.3 기부자 혜택

제3장 협약 이행에의 참여

III.1 공동체, 단체, 해당될 경우 개인 및 전문가, 전문단체, 연구소의 참여

III.2 비정부기구와 협약

III.2.1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정부기구 참여

III.2.2 공인된 비정부기구의 참여

제4장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엠블럼의 사용

IV.1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IV.1.1 총칙

IV.1.2 현지 공동체 및 국가적 차원

IV.1.3 국제적 차원

IV.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엠블럼의 사용

IV.2.1 정의

IV.2.2 유네스코 로고 및 협약 엠블럼 사용에 적용되는 개별 규정

IV.2.3 사용권

IV.2.4 승인

IV.2.5 후원 목적을 위한 엠블럼 사용의 기준과 조건

IV.2.6 상업적 이용 및 계약상 합의

IV.2.7 그래픽 표준

IV.2.8 보호

제5장 위원회 보고

V.1 협약 이행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

V.2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

V.3 보고서의 수취 및 처리

V.4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유산을 보유한 협약 비당사국 보고서

제1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협력 및 국제원조

I.1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1.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당사국은 등재 신청서를 통해 해당 유산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U.1 해당 유산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U.2 a.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당사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생존력이 위태로우므로, 해당 유산은 긴급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는,

b. 해당 유산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도로 긴급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U.3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등이 계속해서 해당 유산을 연행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계획(Safeguarding plan)이 구체화되었다.

U.4 등재 신청이 있기 전에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고, 그들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 받은 후 자유의지에 따라 등재에 대한 사전 동의도 했다.

U.5 제11조 및 제12조에 정의된 것처럼, 해당 유산은 제출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다.

U.6 극도로 긴급한 경우에 관련 당사국은 협약 제17조 3항에 따라 해당 유산 등재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의 대상이 됐다.

I.2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2. 대표목록 등재 신청 당사국은 등재 신청서를 통해 해당 유산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R.1 해당 유산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R.2 해당 유산이 등재되면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확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토론 독려 등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할 것이다.

R.3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 되었다.

R.4 등재 신청이 있기 전에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고, 그들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 받은 후 자유의지에 따라 등재에 대한 사전 동의도 했다.

R.5 협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정의된 것처럼, 해당 유산은 제출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만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I.3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선정 기준

3. 당사국은 협약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례를 선정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소지역 내지는 지역차원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위원회에 제안할 것을 권장한다.

4. 각 회의에서 위원회는 보호라는 특수한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혹은 협약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들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도 선정 및 장려 대상으로 위원회에 제안될 수 있다.

6.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선정 및 장려함에 있어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필요 및 균등한 지역 배분 원칙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고 한편으로 남-남 및 북-남-남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7. 위원회에 제안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 중, 다음 모든 기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P.1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협약 제2조 3항에 정의된 것과 같이 보호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P.2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지역, 소지역 및/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한다.

P.3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반영한다.

P.4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이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생존력 증진의 유효성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P.5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해당할 경우 개인의 참여에 의해 이행되어 왔거나, 혹은 이행되고 있으며, 관련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였다.

P.6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그 사례에 따라 소지역,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의 보호 활동 모델이 될 수 있다.

P.7 신청 당사국, 시행 기관, 관련 공동체, 집단, 혹은 해당할 경우 개인은 이들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선정될 시 모범사례를 보급 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P.8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을 내용으로 한다.

P.9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요구를 적용할 수 있다.

I.4 국제원조 요청 자격 및 선정 기준

8. 모든 당사국은 국제원조를 요청할 자격을 지닌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 제공되는 국제원조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9. 위원회는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각각 협약 제20조와 제21조에 언급된 모든 목적과 형태의 국제원조 요청을 접수,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국제원조 요청에 부여된다.

(a)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유산 보호

(b) 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목록화 작업

(c)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 소지역,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지원

(d) 준비단계 원조

10. 국제원조 평가 시, 위원회는 공정한 지역적 안배 원칙 및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 사항도 고려할 수 있다.

(a) 해당 요청이 양자, 지역적 그리고/또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의미하는지 여부

(b) 해당 지원이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다른 자원으로부터 재정 및 기술적 기여를 촉발할 수 있는지 여부

11. 협약 제20조와 제21조에 명시된 국제원조는 동 협약 제22조(긴급 원조)에 명시되어 있듯 긴급한 순서대로 제공될 수 있다.

12. 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조 제공 결정을 내려야 한다.

A.1 요청서 준비에 참여한 해당 공동체, 단체 그리고/또는 개인들은 요청서 준비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제안된 활동과 평가, 후속조치에도 최대한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이다.

A.2 요청된 원조 금액이 적절하다.

- A.3 제안된 활동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실행 가능하다.
- A.4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 A.5 수혜 당사국은 가용 자원 한도 내에서 국제원조에 의해 제공되는 활동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A.6 원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영역에서의 역량 구축 및 강화를 목표로 한다.
- A.7 수혜 당사국은 예전에 국제원조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당시 모든 관련 규정 및 조건에 준해 활동을 수행했다.

I.5 복수국가 신청

- 13. 유산이 하나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 있을 경우,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복수국가 등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14. 위원회는 소지역 또는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권장한다. 당사국들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 15. 당사국들은 위원회에 국제원조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I.6 확장 또는 축소 등재

- 16.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기 등재되어 있는 유산 종목에 대해,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당사국은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유산의 등재 확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신청에 따라 해당유산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공동체,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 17.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 중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이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해당 유산의 등재의 축소가 가능하다.
- 18. 관련 당사국(들)은 확장 또는 축소 종목에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신청서 제출은 기존 절차와 기한을 따른다.
- 19. 위원회가 새로운 등재 신청을 기준으로 유산을 등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등재가 기존의 등재를 대체한다. 위원회가 신규 등재 신청을 기준으로 유산을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기존등재가 그대로 유지한다.

I.7 등재신청서의 제출

20. 서식 ICH-01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에, 서식 ICH-02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에, 서식 ICH-03은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한다.
21. 당사국들은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및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작성을 위해 준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2. 준비 지원에 한하여, 서식 ICH-05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 지원 요청에 사용한다. 서식 ICH-06은 위원회 선정 및 장려 대상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 지원 요청에 사용된다. 기타 모든 국제원조 신청은 금액에 관계없이 ICH-04 양식을 사용한다.
23. 모든 신청서는 사무국에 요청하거나 www.unesco.org/culture/ich 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요구된 항목에 대한 답변만 기술해야 한다.
24. 등재 신청 당사국들은 공동체, 단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을 신청서 준비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25. 당사국은 위원회 평가가 있기 전 언제라도 등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그래도 협약이 정한 국제원조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I.8 신청서의 평가

26. 등재 신청서, 제안서 또는 국제원조 요청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27. 실험적으로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대표목록,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제안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그리고 미화 25,000 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원조 요청에 대한 평가는 협약 제8.3조에 따라 설립된 심사기구(Evaluation Body)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자문기구는 위원회의 결정을 돕기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심사기구는 균등한 지역 배분과 다양한 무형유산 영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12명의 멤버들로 구성된다: 정부간위원회 비위원국 대표로,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 6명, 인가 비정부기구 6개로 구성된다.
28. 심사기구(Evaluation Body)의 멤버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매년 위원회는 심사기구 멤버의 1/4를 교체한다. 위원회가 개최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사무국은 각 선거 그룹 내 공석이 있는지 여부를 당사국들에 알려야 한다. 최대 3명의 후보자 까지 개최

최소 6주전까지 각 선거그룹 의장은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면 심사기구 멤버는 협약과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

29.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의 경우, 유산의 생존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호계획의 타당성 및 충분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호 수단의 부재, 세계화, 사회 및 환경 변화 등 유산의 소멸 위험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30. 심사기구는 다음에 관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평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에 신청된 유산의 등재 여부
 - 대표목록에 신청된 유산의 등재 여부 또는 해당국에 정보 보완 요구
 - 제안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선정 여부
 - 국제원조 요청 승인 여부
31. 사무국은 요약본과 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여 모든 등재 신청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국제원조 요청서를 개괄한 문서를 위원회에 전달한다. 등재 신청서와 평가 보고서는 협약 당사국에 공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I.9 가장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32. 긴급을 다투는 경우 기준 U.6에 따라, 위원회 집행이사회는 신속 일정표에 따라 긴급 보호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출 이후에 위원회는, 위원회 집행이사회가 사례별로 만든 절차에 따라, 해당 당사국과 협의하여 가능한 빨리 등재 신청서를 검토한다. 긴급을 다투는 사례는 해당 유산이 자국의 영토에 있는 당사국, 기타 당사국, 해당 공동체 또는 자문기구 중 누구라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당사국은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I.10 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33. 위원회는 사용 가능한 자원과 역량에 따라 다음 2년 회기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신청서의 수를 2년 전에 결정한다. 이러한 제한선은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미화 25,000 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원조 요청서로 이루어진 모든 신청서에 적용해야 한다.
34. 위원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한 범위 안에서 등재 신청 1국가당 적어도 하나의 신청서는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i) 유산 등재, 보호 모범사례 선정, 미화 25,000 달러 초과 국제원조 승인,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이 전혀 없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신청서
 - (ii) 복수국가 신청서
 - (iii) 유산 등재, 보호 모범사례 선정, 미화 25,000 달러 초과 국제원조 승인이 같은 회기 동안 다른 신청 국가에 비해 현격히 적은 당사국들이 제출한 신청서
같은 회기 동안 여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사국들은 검토 받기를 원하는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
35. 검토 후 위원회는 해당 유산에 대해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또는 추가 정보를 위해 등재 신청 국가에 신청서 반송 여부,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보호 모범사례 선정 여부, 미화 25,000 달러 초과 국제원조 요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6.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위해 해당 등재 신청 당사국에 반송하기로 결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는 다음 회기에 정보를 보충하거나 갱신한 후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재차 제출할 수 있다.
 37. 위원회가 유산이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동 유산은 4년 이후에야 다시 위원회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 I.11 한 목록에서 다른 목록으로의 유산 변경 또는 목록에서의 삭제 등재 유산 목록 변경
38. 동일한 유산이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동시에 등재될 수는 없다. 당사국은 유산을 하나의 목록에서 다른 목록으로 옮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에는 유산이 옮기고자 하는 목록의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고, 요청은 등재신청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절차와 일정표에 따라 제출된다.
 39. 보호계획 이행 상태 평가 결과, 유산이 하나 이상의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목록에서 삭제한다.
 40. 유산이 하나 이상의 대표목록 등재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I.12 등재 유산 명칭 변경

4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은 등재된 유산의 명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명칭 변경 요청은 적어도 위원회 회기 개시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I.13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42. 위원회는 국제 협력을 통해 모범이 되는 보호 조치 사례 및 모델들이 연구, 기록화, 출판 및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또한 각 당사국이 지원을 받아, 혹은 지원 없이 선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호 조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43.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그러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의 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44. 또한 선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외에도, 위원회는 이미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조치 및 방법론, 그리고 경험을 축적한 경우에 이들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5. 위원회는 선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포함된 보호 조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및 평가를 장려해야 하며 그러한 연구 및 평가 활동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46. 이들 및 기타 보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에서 축적한 경험 및 교훈에 기반을 두어, 위원회는 모범 보호 사례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를 작성한다(협약 제7조 (b))

I.14 국제원조

47. 미화 25,000 달러 이하 국제원조 요청서(준비 지원 요청 제외)와 액수에 관계없는 긴급 요청서는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48. 사무국은 요청서의 완결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누락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들)에게 가능한 요청서 검토 시일을 알려야 한다.
49. 준비 지원을 포함한 미화 25,000 달러 이하 지원 요청서는 위원회 집행이사회가 검토 및 승인한다.
50. 미화 25,000 달러 초과 긴급 요청은 위원회 의장단이 검토 및 승인한다. 국제 원조 신

청이 우선 지원에 합당한 긴급상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은 당사국이 자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재난, 자연 재해, 무력 갈등, 심각한 전염병 또는 기타 자연, 인적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국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 공동체, 단체, 개인 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51. 미화 25,000 달러 초과 원조 요청은 위의 제27 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구가 평가하며, 위원회가 검토 및 승인한다.
52. 사무국은 국제원조 허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요청 당사국에 2주 내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또한 지원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국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3. 국제원조는 그 해당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모니터링 및 보고,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I.15 일정 - 절차 개요

54. 1단계: 준비 및 제출

0차년도 3월 31일 동 날짜까지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신청서 및 협약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 원조 요청(제18조)

1차년도 3월 31일 동 날짜까지 사무국에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및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제안서, 미화 25,000 달러 초과하는 국제원조 요청서 접수.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회차에 검토된다.
사무국은 협약 웹사이트에 접수된 신청서를 원어 그대로 올린다.

1차년도 6월 30일 동 날짜까지 사무국은 신청서 접수, 접수 사실 통보 등 신청 처리. 신청서가 미흡한 경우에는 제출 당사국에 신청서를 완성할 것을 권고

1차년도 9월 30일 신청서 완비를 위한 추가 정보를 요청 받은 경우, 당사국은 동 날짜까지 추가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 여전히 미흡한 신청서는 재반송 후 당사국이 완성하여 다음 회차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사무국 요청에 따라 정보 보완이 완료된 해당국 신청서는 온라인에 게재되며 이전 신청서를 대체한다.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 역시 온라인에 게재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55. 2단계: 평가

1차년도 12월~
2차년도 5월

심사기구에 의한 신청서 평가

2차년도 4월~6월

심사기구의 최종 평가회의

위원회 회기 개시
4주 전

사무국은 평가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회에 전달하고, 당사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한다.

56. 3단계: 검토

2차년도 11월

위원회는 신청서, 제안서, 요청서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림

I.16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 유산의 대표목록 통합

57. 협약 제31.1조에 따라, 위원회는 협약 발효 이전까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포된 모든 유산을 총회에서 당 운영지침이 채택된 이후 협약 제16조에 명시된 대표목록에 자동적으로 통합한다.
58. 자국의 영토에 하나 이상의 걸작선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협약 당사국 및 협약 비당사국)에 당 통합이 적용된다. 자국의 영토에 있는 걸작선포유산이 대표목록에 통합된 협약 비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에 있는 유산에 대해서 협약이 정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진다. 단, 이 경우에 협약 비당사국은 권리와 의무가 따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59. 사무총장은 자국의 영토 내에 걸작선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협약 비 당사국에 당 운영지침의 채택에 대한 통보한다. 당 운영지침에 따르면 걸작선포유산은 미래에 등재되는 유산과 동등하게 취급되고(협약 제16.2에 따라), 모니터링, 목록간 이동 및 목록에서의 제외 등에서 미래에 등재되는 유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당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
60. 앞서 언급한 통보를 통해 사무총장은 협약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백히 밝힐 것을 협약 비당사국에 요청한다(제58항과 59항에 따라).
61. 협약 비당사국이 서면으로 수락 통지를 하면, 협약의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사무총장에게 이를 알린다. 그리고 통지 이후에 해당 걸작 유산은 협약이 정한 모든 규정을 적용

받는다.

62. 협약 비당사국이 1년 이내에 자국의 영토 내에 있고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에 대해 정한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당 유산을 대표목록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다.
63. 협약 비당사국이 1년 이내에 통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거나, 자국의 의향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침묵이나 대응 부족을 제62항의 적용을 정당화 하는 거절로 간주한다. 단,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협약 비당사국이 동의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64. 결국으로 선포되었다가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협약 당사국과 협약 비당사국의 영토에 모두 존재하고 있을 경우, 당 유산은 협약이 정한 모든 법적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협약 비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대로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협약이 정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협약 비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협약 비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5. 위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당 운영지침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취한 조치를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 기금

II.1 기금 자원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66. 재무규정 제1조 1항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재원은 주로 협약 제5장에 기술된 국제원조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7. 자원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 (a) 재무규정 제 6조에 언급된 예비금(Reserve Fund)의 보충
 - (b) 협약 제18조 하에 이루어지는 제안 등을 포함한, 제7조에 기술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타 기능 지원
 - (c) 위원국인 개도국 대표의 회의 참석 비용. 단, 해당 대표가 무형문화유산 분야 전문가가여야 한다. 또한, 위원국은 아니나 협약 당사국인 개도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대표의 회의 참석 비용을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d) 위원회 요청에 따라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구 그리고 공공/민간단체 및 개인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
- (e) 위원회가 특정 문제에 대해 공공/민간단체, 특히 관련 공동체 및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그 회의에 초청한 경우 이들의 참석 비용

II.2 무형문화유산 기금 자원 증대를 위한 수단

II.2.1 기부자

- 68. 위원회는 본위원회 기능 실행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무형문화유산 기금(이하 기금)에 대한 기부를 환영한다.
- 69. 위원회는 유엔과 유엔개발프로그램을 비롯한 산하 전문 기관 및 프로그램과 기타 국제 기구의 기부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는 협약 당사국과 기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공 및 민간 기구, 개인의 기금에 대한 기부를 환영한다.
- 70. 위원회는 협약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둔 국가, 공공, 민간 재단 또는 협회의 설립을 장려하며 그들의 무형문화유산기금에 대한 기부를 환영한다.
- 71.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수행되는 무형문화유산기금을 위한 국제 모금 활동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II.2.2 조건

- 72. 기금에 대한 기부에는 협약의 목표와 양립 불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 73. 협약의 목표와 원칙, 기존의 국제인권조항, 지속 가능한 개발 요건, 또는 공동체, 단체 및 개인 간 상호 존중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기부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에 구체적인 기부 사례를 결정해 제시할 수 있다.
- 74. 무형문화유산 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는 기금의 재무 규정, 즉 총회에서 의결한 기금 사용에 대한 지침 및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기금사용계획에 따라 운용된다. 특히 다음 규정은 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에 적용된다.
 - (a) 기부자들은 위원회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b) 기부자에게 개별적인 설명이나 재무 보고서가 제공하지 않는다.
 - (c) 계약은 사무국과 기부자 사이에 주고받은 한 차례의 서신을 통해 체결된다.

75. 자발적 기부는 운영지침 부록***에 첨부된 샘플 서신에 나온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자발적 기부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는 www.unesco.org/culture/ich or by writing to ich@unesc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2.3 기부자 혜택

76. 사무국은 매년 기금에 제공된 자발적 기부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부자들이 원할 경우 기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기부는 협약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77. 공식으로 인정되는 기부는 다음과 같다.

(a) 당사국의 추가적인 자발적 기부: 사무국은 알파벳 순서로 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부를 제공한 당사국 목록을 갱신하여 우선적으로 협약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인쇄본은 총회 개최에 맞춰 격년으로 발행한다.

(b) 협약 비당사국, 유엔, 유엔 산하 전문 기관 및 프로그램, 기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에 의한 기부: 사무국은 알파벳 순서로 기부금을 제공한 협약 비당사국, 유엔, 유엔 산하 전문 기관 및 프로그램, 기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명단을 갱신하여 우선적으로 협약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인쇄본은 총회 개최에 맞춰 격년으로 발행한다.

(c) 민간기구 및 개인에 의한 기부: 사무국은 기부금 액수 내림차순으로 기부금을 제공한 민간기구 및 개인 목록을 갱신하여 우선적으로 협약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인쇄본은 총회 개최에 맞춰 격년으로 발행한다. 기부금 기탁 후 24개월 동안 민간 기부자들은 브로슈어와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통해 위원회와의 협력관계를 홍보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사전에 사무국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부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선전할 수 없다.

78. 당사국들은 기금에 대한 민간 기부를 세금혜택 또는 국내법에 준하는 기타 국가 정책 등 자발적인 금전적 기부를 촉진하는 재정적 조치의 수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장한다.

제3장 협약 이행에의 참여

III.1 공동체, 단체, 해당될 경우 개인 및 전문가, 전문단체, 연구소의 참여

79. 협약 제11조 (b)와 제 15조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전문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간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을 창조, 유지, 전승하는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들 간의 기능적이고 보완적인 협력 구축을 장려한다.
80. 전문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공동체, 집단, 해당되는 경우 개인의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한 자문기관 또는 협력 기제 창설을 당사국에 장려한다.
 - (a)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다른 요소들의 지정 및 정의 작업.
 - (b) 목록(inventory) 준비.
 - (c)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이행 및 이행 과정.
 - (d) 당 운영지침 제1장의 관련 단락에 의거, 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 준비.
 - (e) 당 운영지침의 제38항~제40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삭제 또는 다른 목록으로의 이전.
81. 당사국은 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할 수 있는 개인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조치를 위한 표준규정을 정립을 통해서 전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82. 협약 제 11조, 제15조 조항에 합치 하여, 당사국은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3. 당사국은 협약 제13조 (c)에서 언급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협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내의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 및 지역 센터에 관한 목록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장려된다.
84. 현 운영지침 89항에서 언급된 민간 및 공공 기관 가운데, 위원회는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 및 협약에 명시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지역 센터를 참여 시키도록 하며, 특히,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85. 당사국은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제13조 (d)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특별한 측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관습을 침해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86. 당사국은 소지역 및 지역적 수준에서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하여 협력을 바탕으로 다학

제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87.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기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 해당 당사국과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이로써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하는 경우 개인을 포함한 전문가, 전문센터와 연구소는 관련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8. 당사국은 협약 제 19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하는 경우 개인 및 전문가, 전문 센터와 연구소의 참여를 통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인 무형문화유산 관련 카테고리 2급 기관의 활동을 포함한 지역협력을 장려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89.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협약 제 8.4항에 의거 쌍방향 대화를 지속하고 특정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하는 경우 동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 받는 개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 등 민관 기구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III.2 비정부기구와 협약

III.2.1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정부기구 참여

90. 협약 제11(b)조에 따라, 협약 이행에 관련된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고 조정하면서,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및 기타 적절한 보호 조치에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도록 권장 한다.

III.2.2 공인된 비정부기구의 참여

비정부기구 인정의 기준

91. 비정부기구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a)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특정 분야에 속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그 능력, 전문성과 경험을 증명해왔다. 협약 제2.2조
 - (b) 해당하는 바에 따라 지방, 국가,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
 - (c) 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되도록이면 이들 목적과 일관된 법규 내지 규약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d) 무형문화유산의 창조, 유지 및 전승하는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할 경우 개인과 상호 존중 정신에 입각하여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 (e) 다음을 포함한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i.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해당 공동체가 설립된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결속되어 공동체를 형성한다.
 - ii. 법적 주소지를 보유하고 국내법에 준해 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iii. 인정 고려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 및 관련 활동 수행 경력이 적어도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인정방식 및 검토

- 92. 위원회는, 사무국이 비정부기구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하여 이들 기구의 인정 및 이들과의 관계 유지 혹은 종결과 관련한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 93. 위원회는 협약 9조에 근거해 총회에 이들 추천서를 제출한다. 비정부기구 인정 요청서를 접수 및 검토함에 있어 위원회는 사무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리적으로 균등한 대표성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정된 비정부기구는 해당 국내법과 국제법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94. 위원회는 인정 후 매 4년마다 관련 비정부기구의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기구의 기여도, 헌신도 및 관계성을 검토한다.
- 9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검토 시점에 관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정황상 필요할 경우, 관계 종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기구와의 관계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자문 기능

- 96. 협약 제9조 1항에 따라 자문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인된 비정부기구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문건으로서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a) 긴급보호목록을 위한 등재 신청
 - (b) 협약 제18조에 언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 (c) 국제원조 요청
 - (d) 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보호 계획의 결과

인정 절차

97. 위원회 자문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인정을 요청한 비정부기구는 사무국에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공식명칭을 포함한 기관소개
 - (b) 주요목적
 - (c) 주소
 - (d) 설립일 혹은 대략적인 존속 기간
 - (e) 해당 기구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명
 - (f) 다음의 증거를 포함하여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i.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해당 공동체가 설립된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하에 결속되어 공동체를 형성한다.
 - ii. 법적 주소지가 있고 국내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iii. 인정 고려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설립 및 관련 활동 수행 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한다.
 - (g) 동 기구의 무형문화유산보호 분야의 활동
 - (h) 지역 공동체, 집단 및 무형문화유산 실연자와의 협력 경험에 대한 기술
98. 공인에 대한 요청은 서식 ICH-09을 사용하여 준비한다(www.unesco.org/culture/ich 또는 사무국에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요청서는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그에 국한하여 포함해야 한다. 요청서는 위원회의 일반 회기가 개최되기 최소 4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접수한다.
99. 사무국은 제안서를 등록하고 위원회의 공인을 받은 비정부기구 목록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제4장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엠블럼의 사용

IV.1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IV.1.1 총칙

100.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해당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확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 그것에 대한 상호 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1. 특정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있어 모든 당사자가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 (a) 해당 무형문화유산은 협약 제2.1조의 정의에 부합한다.
 - (b) 해당 공동체, 단체 및 경우에 따라 개인들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며, 인식 제고 활동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한다.
 - (c) 인식 제고 활동은 신비하고 신성한 영역에 속하는 특수한 유산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공동체의 관례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d) 해당 공동체, 단체 및 경우에 따라 개인들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취해진 활동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
102. 모든 당사자들은 인식제고 활동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탈맥락화 또는 변성시킨다.
 - (b) 해당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들이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낙인을 찍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
 - (c) 형태를 막론하고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언어적 또는 성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 (d) 해당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부추긴다.
 - (e) 지나친 상업화를 야기하거나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지속 불가능한 관광을 추진한다.

IV.1.2 현지 공동체 및 국가적 차원

103. 당사국은 협약의 조항과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윤리규정을 수립 및 채택하여 그들 각각의 영토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제고 방안을 확보하도록 한다.
104.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기타 적절한 형태의 법적 보호조치의 적용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창조·보유·전승하는 공동체, 단체, 개인들이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또는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5. 당사국들은 적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위협 요소들, 그리고 협약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a)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형식의 매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방송한다.
 - (b) 무형문화유산 관련 심포지엄, 워크숍,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축제, 무형문화유산 주간 또는 경진대회를 지원한다.
 - (c) 사례연구와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정보를 보급한다.
 - (d)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실연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e) 공동체 단위의 협회 설립을 추진 및 지원하고 협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 (f) 영토 내에서 만들어진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이 문화적 다양성 및 국가의 부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g)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역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106. 당사국들은 무엇보다도 협약 제18조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의 추진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식, 비공식 교육 대책

107. 당사국은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역량 강화 활동과 비공식 지식 전수 수단 등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존중,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협약 제14조(a)).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 목적을 위한 조치와 정책을 실행

시하도록 권장한다.

- (a) 통합 및 문화 간 대화의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증진과 방안을 포함한 다언어 교육 증진
- (b) 지역 특색에 적합한 교과과정 내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도서, CD, 비디오, 기록영화, 매뉴얼, 또는 브로슈어 등 적합한 교육 및 훈련 자료 개발
- (c) 무형문화유산 지도 교사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안내서 및 매뉴얼 개발
- (d)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지도하기 위한 주제와 모듈을 제시하고자 학부모와 학부모 협의회 참여
- (e)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실연자와 전승자의 참여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이들이 보유한 유산 설명하도록 초빙
- (f) 지역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급에 젊은 세대 참여
- (g) 무형문화유산에 내재된 지식과 기술의 비공식적 전승이 지닌 가치 인정
- (h) 게임, 개인지도, 도제제도 등의 참여형 교육방식을 통한 실질적인 무형문화유산 체험에 특혜 부여
- (i) 하계훈련, 공개수업, 방문, 사진/비디오 경연, 문화유산여행, 자연녹지 및 무형문화유산 표현에 필요한 유물이 있는 장소 방문 등의 활동 개발
- (j) 필요할 경우, 정보와 통신기술을 적극 활용
- (k) 대학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 실시와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학제간 연구와 연구 방법론 개발 촉진
- (l) 개인의 발전과 경력 개발을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젊은 세대에 알려줌으로써 직업상 지침 제공
- (m)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기업의 운영에 종사하는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들을 훈련

공동체 센터와 협회, 박물관, 아카이브, 기타 유사기관

108.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창설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센터와 협회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공동체 센터와 협회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a)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이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는 문화 공간으로 사용

- (b) 전통 지식과 기술을 전승하는 장소로 사용하며 그 결과 세대간 대화에 기여
 - (c)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 센터로 활용
109. 연구기관, 전문센터,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기록화센터 및 유사 기관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보관·보존하고, 정보 제공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다음의 활동을 권장한다.
- (a) 유산 관련 전시, 강연, 세미나, 토론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실연자를 참여시킴
 - (b)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적 접근법을 도입하여 발전
 - (c) 무형문화유산과 연관된 물건보다는, 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에 초점을 맞춤
 - (d) 필요할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 (e)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형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연자와 보유자를 운영에 참여시킴

정보기술과 대중매체

110. 대중매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11. 대중매체가 무형문화유산의 미학적, 오락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적 결속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112.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과 상품의 생산 등을 통해 대중매체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113. 시청각 매체가 양질의 TV/라디오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현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과 그 역할을 증진하도록 장려한다. 현지 방송국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증진과 모범 보호사례의 확산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114. 공동체의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방송국을 활용하거나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대중매체가 공동체 내 정보 공유에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115. 정보기술기관이 쌍방향 프로그램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을 개발하는 등 정보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비공식적 수단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상업적 활동

116. 특정 무형문화유산에서 비롯된 상업적 활동과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는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연자들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해당 유산을 보유하고 실연하는 공동체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 활동과 거래가 무형문화유산의 생존력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해당 공동체가 최우선 수혜자가 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상업적 활동이 의식, 사회적 관행, 또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의 영역에서 표현되는 무형문화유산의 속성과 생존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7. 부적절한 상업적 남용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운영하며, 상업적 이해당사자, 공공기관, 문화유산 실연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해당 공동체를 위한다고 상업적 이용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V. 1.3 국제적 차원

118.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위원회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매해 업데이트하여 발표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및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공식, 비공식 수단을 통한 목록의 광범위한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a) 유네스코 협동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소속 학교를 포함한 학교 기관
- (b) 공동체 센터,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유사기관
- (c) 대학, 전문센터, 연구기관
- (d) 유네스코 웹사이트를 포함한 각종 유형의 매체

119. 위원회는 시청각/디지털 자료 및 간행물과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지도, 우표, 포스터, 또는 스티커 등 홍보 자료의 생산을 장려한다.
120. 목록 등재 유산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보급할 때 유산이 지닌 심미적 매력이나 오락적 가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산의 맥락을 제시하고 해당 공동체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1.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제118항에 제시된 방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범 사례를 확산시킴으로써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122.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가능한 최대로 높이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본 운영지침 제126~150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협약 엠블럼을 이 목적을 위해 수립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23.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있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a)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시스템, 웹사이트의 유지 및 업데이트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교환·보급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 (b) 공동체와 집단,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전문센터, 연구기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조직체 간의 정보 교환 촉진
 - (c) 보호 및 인식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들에게 보내는 교육 및 정보 자료를 생산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는 쉽게 재생산되고 현지어로 번역
 - (d) 협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참여
 - (e) 유네스코 국제규범과 프로그램 담당 사무국뿐 아니라 UN 산하기관과 프로그램, 기타 정부간 기구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조율
 - (f) ‘세계 모어의 날’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등 국제 기념행사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기금에 대한 자발적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
 - (g) 유네스코 장학제도와 연수제도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훈련 포함

IV.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엠블럼의 사용

IV.2.1 정의

124.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협약 엠블럼이나 로고는 다음과 같다.



125. 협약 엠블럼은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분리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각각은 개별 규정에 좌우되며, 이러한 개별 규정에 따라 그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IV.2.2 유네스코 로고 및 협약 엠블럼 사용에 적용되는 개별 규정

126. 현행 운영지침 규정은 협약 엠블럼 사용에 한해 적용된다.

127. 협약 엠블럼과 함께 사용되는 유네스코 엠블럼이나 로고의 사용은 유네스코 본회의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이름, 약자, 로고,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에 좌우된다.¹

128. 따라서 유네스코 로고와 결부된 협약 엠블럼의 사용은 현행 운영지침(협약 엠블럼 관련 규정)과 유네스코 이름, 약자, 로고,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유네스코 로고에 관해)에 의거하여 개별 절차에 따라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IV.2.3 사용권

129. 총회와 위원회 등 협약상의 법정 조직만이 사전 승인 없이 현행 운영지침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엠블럼 사용권을 지닌다.

IV.2.4 승인

130. 협약 엠블럼 사용에 대한 승인은 본회의와 위원회 등 협약상의 법정 조직에 우선권이

¹ 유네스코 이름, 약자, 로고,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의 가장 최신판은 제 34 차 본회의 결의 86 부록(34 C/Resolution 86) 또는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있다. 현행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 사례에서, 법정 조직은 사무총장에게 다른 조직에 이러한 사용을 승인할 권한을 위임한다. 협약 엠블럼의 사용 승인은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131. 총회와 위원회는 특히 공식 파트너가 실시하는 활동,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수상식 및 당사국 내에서의 특별 행사가 있을 경우, 결의와 결정문을 통해 협약 엠블럼의 사용을 승인한다. 총회와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또는 기타 적법하게 지정된 권위 있는 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엠블럼을 사용하고 엠블럼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32. 협약상의 법정 조직은 현행 운영지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부여된 승인 조건이 결의와 결정문에 명시되도록 보장한다.
133. 사무총장은 후원과 계약상 합의, 파트너십뿐 아니라 특정 홍보활동과 관련해 협약 엠블럼의 사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134. 협약 엠블럼의 사용 승인은 (i) 제안된 제휴가 협약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지 여부와 (ii) 협약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35. 법정 조직은 사무총장에게 특히 후원, 파트너십, 상업적 이용의 허용에 관한 구체적인 승인 사례를 제시하거나 사용 그리고/또는 승인의 특정 사례에 대한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6. 사무총장은 협약상의 법정 조직에 특정 승인 사례의 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V. 2.5 후원 목적을 위한 엠블럼 사용의 기준과 조건

137. 공연, 영화상연, 기타 시청각 자료 제작, 간행, 집회, 회의 및 학회, 시상식, 기타 국내외 행사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을 구현하는 작품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엠블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38. 후원 목적으로 협약 엠블럼의 사용을 요청하는 절차는 사무국이 정하며 다음 기준과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기준

- i. 영향력: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협약의 가시성을 상당할 정도로 제고시킬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활동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ii. 신뢰성: 책임자(전문적 경험과 명성, 추천사항, 법적·재정적 보증)와 관련해 활동(정치적, 법적, 금융적,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b) 조건

- i. 후원 목적의 협약 엠블럼의 사용은 사무국이 적어도 예정 기간의 첫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요청해야 한다. 후원 목적의 협약 엠블럼의 사용은 서면으로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승인한다.
- ii. 국가 활동의 경우, 후원 목적의 협약 엠블럼 사용 승인은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토의 당사국과의 의무적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 iii. 협약은 특히 엠블럼 사용을 통해 적절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 iv. 개별 활동이나 주기적 활동에 대한 후원을 목적으로 협약 엠블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기간은 정해져 있고 승인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139. 관련 공동체, 집단, 해당할 경우 개인은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이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특별 행사와 관련하여, 현행 운영지침에 규정된 조건하에 협약 엠블럼을 사용하도록 한다.

IV.2.6 상업적 이용과 계약상 합의

140. 외부 기관의 협약 엠블럼의 상업적 이용(예: 민간부문 또는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공동 발간 또는 공동 제작 협약, 또는 전문가와 협약을 지원하는 인격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외부기관 간에 체결되는 계약상 합의는 엠블럼 사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기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41. 약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은 지정된 활동의 맥락에 한정되어야 한다.

142.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약 엠블럼이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는 운영지침의 목적을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협약 엠블럼의 상업적 사용은 특정 계약상 합의에 따라 사무총장이 명시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엠블럼의 상업적 사용이 목록에 등재된 특정 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국(들)과 상의한 후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43.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리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무총장은 무형문화유산기금이 수익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금에 수익을 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금에 제공되는 이 기부금은 무형문화유산기금 재무규정에 준한다.

IV.2.7 그래픽 표준

144. 협약 엠블럼은 사무총장이 상술하는 정확한 그래픽 표준에 따라 재생산하고 협약의 웹사이트에 공식 발표해야 하며 변경해서는 안 된다.

IV.2.8 보호

145. 1883년 채택되고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에 따라 파리동맹 회원국이 협약 엠블럼을 알리고 수용하였으므로, 유네스코는 파리협약 회원국의 국내 제도에 의거하여 유네스코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관계없이 사용되거나 오남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협약 엠블럼의 사용을 금지한다.

146.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엠블럼 사용의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의 명칭과 주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147. 국가 차원에서 엠블럼 사용을 요청하는 자는 지정된 국가 당국과 상의하도록 한다. 사무국은 지정된 국가 당국에 승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48. 특정 경우 협약의 법정 조직은 사무총장에게 협약 엠블럼의 적절한 사용을 감시해 줄 것과 필요할 경우 남용을 막는 절차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9. 사무총장은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 엠블럼의 승인 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관할 국가 당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50. 사무총장과 당사국은 국가 차원에서 승인 받지 않은 협약 엠블럼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국가 기관과 연락하여 현행 운영지침에 따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위원회 보고

V.1 협약 이행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

151. 각 협약 당사국은 협약이행을 위해 수립된 법, 규범 및 다른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52.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하고 사무국이 제공하는 공통 가이드라인과 및 양식에 근거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보호 조치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의 기탁이 이루어진 년도로부터 6년째 되는 12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매 6년마다 보고되어야 한다.

153. 당사국은 국내적 수준에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a) 협약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지역 내에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분류목록(inventory) 작성 작업에 관한 내용
 - (b) 협약 제11조 및 제13조에 언급된 것과 같이 보호를 위한 기타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i. 사회내의 무형문화유산 기능 제고 및 동 유산의 계획 프로그램으로 유산보호활동 통합
 - ii. 효율적인 보호의 관점을 견지한 과학적, 기술 및 예술적 학문 양성
 - iii. 무형문화유산의 특정한 면을 관찰하는 관행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능한 동 유산과 관계된 정보 접근용이
154. 당사국은 협약 제13조에 준해 국내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a)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한다.
 - (b)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관리를 위한 훈련 기관을 육성한다.
 - (c) 무형문화유산 기록원을 설립하고, 가능한 정도까지, 관련 자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155. 당사국은 특히 협약 제14조에서 언급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다 큰 인식, 존중 및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보호조치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 (a) 교육,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 (b) 관계 공동체 및 집단 내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c)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 (d) 지식 전수의 비공식 수단
 - (e) 장소에 갖는 의미 및 자연지역 보호에 관한 교육
156. 당사국은 협약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 조치들, 예컨대 정보 및 경험의 교류, 및 기타 공동 보호 방안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을 위해서 양자,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보호 조치에 관해서 보고한다.
157. 당사국은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종목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보고한다. 당사국은 각 종목과 관련된 보고서 준비 과정에 관련 공동

체, 집단 및 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되어야 한다.

- (a) 각 유산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
- (b) 유산에 현재 당면한 위험성 및 생존력에 관한 평가
- (c) 목록의 목적에 공헌도
- (d) 특히 유산의 등재로 말미암아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의 이행에 있어, 그것을 제고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 (e) 유산의 보호 및 또 다른 보호 활동을 위한 노력에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참여

158. 당사국은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관리 기관/상태(환경)에 관한 보고를 한다. 동 보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a) 유산 보호활동 또는 관리에 참여하는 전문 기관
- (b) 관련 공동체 또는 유산이나 동 유산의 보호와 관계된 집단의 기관

159. 위 96항에 규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를 위해서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언급하는 특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V.2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에 등재 유산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

160.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검토 이후에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 긴급보호목록으로 등재된 자국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당사국은 동 보고서 준비 과정에 관련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할 수 있는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61. 동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 및 공통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유산이 등재된 해로부터 4년째 해의 12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매 4년마다 보고를 갱신해야 한다. 목록등재 시 위원회는 각기 다른 사례들에 근거하여 규정된 4년 주기보다 우선할 수도 있는 보고에 대해서 특별한 타임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162. 당사국은 유산의 현 위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a) 유산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
- (b) 유산의 생존력에 대한 평가 및 현재 당면한 위험

- (c) 특히 등재 시에 제출된 보호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산의 보호에 관한 노력의 영향
 - (d) 유산의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참여 그리고 추가 보호 활동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
163. 당사국은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산의 관리 기관/상태(환경)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동 보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a) 유산 보호활동 또는 관리에 참여하는 전문 기관
 - (b) 관련 공동체 또는 유산이나 동 유산의 보호와 관계된 집단의 기관
164. 위 161항에 규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를 위해서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언급하는 특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V.3 보고서의 수취 및 처리

165.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에 대해서, 사무국은 동 보고서를 등록하고 수취 확인을 해야 한다. 보고서가 미비할 경우 당사국은 보완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66. 사무국은 각각의 정기회의 이전에 접수한 모든 보고서 총람을 위원회로 전달한다. 동 총람과 보고서는 당사국들의 참고용으로 열람 가능하다.
167. 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다음 회의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이용 가능하다.

V.4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유산을 보유한 협약 비당사국의 보고서

168. 이 이행지침의 157-159항 및 165-167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통합된 대표목록 유산 지역을 보유한 협약 비당사국에게 완전히 적용되며 지침 안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일 것을 승낙한다.
169. 그러한 보고서는 협약 비당사국의 유산이 대표목록으로 통합된 그 해로부터 6년째 되는 년도의 2014년 12월 15일까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매 6년마다 보고(갱신)해야 한다.